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2.08)

개요

- 농림수산식품부는 25개 법률의 제·개정안을 추진하는 「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」을 확정함.
- 이번 정부입법계획은 지난 1.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,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3월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.

주요내용

1) 신규 제정 법률안(2개)

- 「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 -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·관리
- 「어업구조조정특별법」
 -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,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어법 전반의 구조조정 규정

2) 개정 추진 법률안(18개)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, 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, 「양곡관리법」, 「인삼산업법」, 「동물보호법」, 「식물방역법」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등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: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 지원과 (가칭)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 근거
 - 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: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여건변화에 맞게 바꾸어나가는 근거

- 「양곡관리법」: 공공부문 쌀급식 등 이용 촉진과 쌀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: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 마련
- 「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: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

3)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제·개정 법률안 (6개)

- 「낙시관리 및 육성법(제정)」,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농약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, 「수산동물질병관리법」 등
 -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
 -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
 - 「농약관리법」: 고독성농약의 사용금지 및 처벌 강화
 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: 농자재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를 농산물과 같이 실시

* 법률안별 주요 제 개정내용 및 입법추진일정 : 별첨 참조

<별첨>

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(25개 법률안)

순위	법률안명	주요 제 개정내용	입법 추진 일정
1	낙시 관리 및 육성법(제정)	○낙시제한기준 설정 ○낙시 제한·금지구역 지정 ○유해 낙시도구 제조 등 금지 ○낙시터업 허가·등록제 시행	○법제처제출: 1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2월 28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 * '09년 이후 계속
2	농산물품질관리법(전부)	○「 농산물품질관리법 」에 「 수산물품질관리법 」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」으로 개정 ○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○원산지표시 업무, 수산물가공 업무, 수산동물 이식지역 기능을 「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, 「수산동물질병관리법」 등으로 이관	○법제처제출: 1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3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1년 * '09년 이후 계속
3	농약관리법(전부)	○법명을 「 식품보호제 관리법 」으로 변경 ○고독성 등 위해성 농약 회수·폐기 ○부정농약 유통·사용자 처벌 강화 ○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도입 등	○법제처제출: 2월 28일까지 ○국회제출: 4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 * '09년 이후 계속
4	친환경농업 육성법(일부)	○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,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○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제심사의 절차·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	○법제처제출: 2월 28일까지 ○국회제출: 4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 * '09년 이후 계속
5	식품산업진흥법(일부)	○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상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「식품산업진흥법」으로 이관 통합 ○식품명인 지정,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	○법제처제출: 2월 28일까지 ○국회제출: 4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 * '09년 이후 계속
6	수산동물질병관리법(일부)	○「기르는 어업육성법」 및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“수산생물 진료”와 “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”에 관련된 사항을 「수산동물질병 관리법」으로 이관하여 통합	○법제처제출: 2월 28일까지 ○국회제출: 4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 * '09년 이후 계속
7	농수산물 유통공사법(일)	○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 이 식품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.	○법제처제출: 4월 30일까지 ○국회제출: 6월 30일까지

순위	법률안명	주요 제 개정내용	입법 추진 일정
	부)	○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구체화	○시행: 공포 후 6개월
8	산림기본법(일부)	○산촌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무 지방이양	○법제처제출: 5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7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9	청원산림보호	○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추가(국립수목원장, 직원 배치에 국립휴양림관리소장 등) ○청원산림보호직원 증정계의 종류에 해임 추가	○법제처제출: 5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7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10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)	○ 마을 농어업법인 설립·지원 근거 등 마련 ○농림수산정보센터, 농업인재개발원,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(가칭)「 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 」 설립 근거 마련	○법제처제출: 6월 30일까지 ○국회제출: 8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
11	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(일부)	○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○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·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	○법제처제출: 6월 30일까지 ○국회제출: 8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
12	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(일부)	○임산물 가공업의 지원,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또는 해제 사무 등을 지방이양	○법제처제출: 6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8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13	사방사업법(일부)	○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 ○사방지의 지정 및 해제 사무 등 지방이양	○법제처제출: 6월 30일까지 ○국회제출: 8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14	가축전염병예방법(일부)	○매몰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·관리하고, 매몰한 토지는 경작지, 구조물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 ○시·도지사에게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·감독 권한을 부여	○법제처제출: 7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9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일
15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일부)	○산림사업법인의 등록·취소사무 지방이양	○법제처제출: 7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9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16	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일부)	○수목원조성계획 승인, 수목원의 등록·말소 사무 등 지방이양 ○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	○법제처제출: 7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9월 30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3개월
17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일부)	○농산물 불공정거래 유형을 나열하고 조사 및 제재 조치 등 명시 ○대금정산회사의 설치근거 및 자본금 출자·지원 근거 조항 신설 ○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시 업무정지 및	○법제처제출: 8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: 10월 31일까지 ○시행: 공포 후 6개월

순위	법률안명	주요 제 개정내용	입법 추진 일정
18	식물방역법(전부)	과태료 중복규제 개선 ○병해충 예찰·방제 체계개선 ○수입식물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 도입 ○검역물의 보관관리인 등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 도모	○법제처제출 : 8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19	어장관리법(일부)	○과태료 부과 징수,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등 지방이양 추진 ○어장의 범위를 면허받은 어장과 일부 허가받은 어장에서 어업허가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	○법제처제출 : 8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0	인삼산업법(일부)	○기술훈련으로 등장한 수경인삼 및 흑삼의 제도화, 산양삼 관련 법적 통합성 확보 ○인삼경작 시 금지되어 있는 화학비료 사용 제검토 ○휴폐업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되, 직권말소·의무적 통보 등 보완제도 규정	○법제처제출 : 8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1	산지관리법(일부)	○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목적사업 착수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○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“주택지”를 명확하게 규정 ○보전산지 지정·해제 사무 등 지방 이양	○법제처제출 : 9월 30일까지 ○국회제출 : 11월 30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2	동물보호법(일부)	○동물의 적절한 사육·관리방안 개선 ○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개선 ○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실험동물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○동물판매업·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○양벌규정 개선	○법제처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2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3	양곡관리법(일부)	○양곡관리법 명칭 변경 ○편제에 쌀 이용촉진 분야 장(章) 신설 ○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지원 및 특별자금 지원 근거 등 마련 ○가공용 쌀 원료 수급안정(공급)에 관한 사항 등 가공산업기반 강화 ○군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급식에 쌀 가공식품 국산 쌀 사용 권장	○법제처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2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4	농림수산물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	○농어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 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농어업 단지로 지정·관리 하는 절차 및 관련 사항	○법제처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2월 31일까지

순위	법률안명	주요 제 개정내용	입법 추진 일정
	에 관한 특별법(제정)	들을 규정 ○농어업단지는 지자체 등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·관리	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5	어업구조 조정특별법(제정)	○어선어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근거 마련 ○주변국과의 어업협정(한·일, 한·중) 이행, IUU(불법, 비보고, 비규제) 협정, FTA체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 특별감척 추진근거 마련 ○감척 시 인센티브, 잔존자 부담제도 마련	○법제처제출 : 10월 31일까지 ○국회제출 : 12월 31일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